

# 진해석동 우림필유 잔여주택 일반매각 공고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매각공고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일반매각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

- 이 주택의 매각공고일은 2024.04.15(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가능연령,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거주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정책에 따라 우리공사(LH)가 2008년도 이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고 퇴거하여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주택(사전)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내부를 확인 후 청약 또는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발견되는 시설물(디지털 도어락, 세대열쇠, 공동현관 카드키,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전기·전자제품,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여건,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본인이 주택개방일에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주택상태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매각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됨)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매각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므로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당첨자(계약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통해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객관적인 증명(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예비자 당첨 포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을 부과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후 잔여주택에 대하여 추후 공급조건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일정(서류접수처 및 상세일정 공고문 하단 참조)

공고	주택사전개방	청약접수 (인터넷·모바일 접수만 가능)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자 서류제출 (등기우편만 가능)	주택개방	당첨자 계약체결
2024.04.15(월)	2024.04.23(화)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4.04.25(목) ~ 04.26(금) 10:00 ~ 17:00	2024.04.30(화) (17:00이후)	2024.04.30(화) ~ 05.03(금)	2024.06월 중	2024.06월 중
LH 청약플러스 (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및 모바일앱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45 진해석동 우림필유 114동 301호	LH 청약플러스(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및 모바일앱		<b>2024.05.03(금)</b> <u>우체국 소인분까지</u> <b>유효</b>	당첨자 개별안내	당첨자 개별안내

I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45 진해석동 우림필유

■ 공급호수 : 총 1호

주택형	동	호	세대 당 계약면적(㎡)						분양가격(단위 : 원)			최초입주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총계	계	계약금(10%)	잔금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084.9900	114	301	84.99	27.47	112.46	2.67	32.73	147.86	331,000,000	33,100,000	297,900,000	'08.12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사전개방

주택사전개방 일시	주소	방문방법
2024.04.23(화)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진해석동 우림필유 114동 301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45)	공동현관(경비실 호출) 세대방문(개방일시 내 상시 개방)

※ 주택사전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택사전개방일에 주택을 확인하시고, 확인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첨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 주택상태 확인을 위한 주택개방 1회 추가 실시)

2. 분양대금 납부

■ 분양대금은 ①계약금 + ②잔금 및 ③관리비에치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은 각각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농협 824-01-016507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① 계약금 : 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계약자명의로 입금)

② 입주잔금 : 잔금 납부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납부(선납할인 미적용)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관리비에치금) 모두 완납 후 입주 가능합니다.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계약자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당일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하며, 소유권이전서류 준비를 위하여 잔금납부일 최소 10일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매각공고일 현재) ]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③ 관리비에치금 : 관리비에치금(입주 시 한번만 납부)은 잔금 납부기간에 잔금과 함께 납부

전용면적	관리비 예치금
84.99	238,000원

• 혼동 방지를 위해 잔금, 관리비에치금을 구분 가능하도록 별도 납부(총 2회 입금)바랍니다.

• 관리비에치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된 계약자에 한하여 입주(세대 비밀번호 안내)가 가능하며, 입주일(세대 비밀번호 안내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잔금납부기한종료일까지 미입주 시는 잔금납부기한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매각공고일(2024.04.15)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합니다.(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됨)
  - ※ 1세대 1인 신청, 1인 계약을 원칙으로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여 중복 계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개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범위(자격검증대상)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2.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공고문 1페이지 내용 참조)
    - ※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4배수의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 시 선정한 예비 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예비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하며, 미계약 잔여세대가 없는 경우 문자 안내 후 예비자 지위는 삭제 처리됩니다.**

II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첨자발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당첨자(예비자)는 판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 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산정 기준**

- 주택 소유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한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2006.5.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IV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순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무순위	2024.04.25(목)~04.26(금)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및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및 계약 등 전체 주요 일정은 본 공고문 1페이지 하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 방문신청불가)**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온라인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10:00~17: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당일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3.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거주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접수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접수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당첨자(예비자) 발표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됩니다.

구분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자)	계약체결(당첨자)
일시	2024.04.30(화) 17:00이후	2024.04.30(화) ~ 2024.05.03(금) [등기우편접수] * 2024.05.03(금)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2024.06월 중 (당첨자 개별안내)
장소	LH 청약센터(apply.lh.or.kr)	우편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임대공급운영부 진해석동 우림필류 담당자 앞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임대공급운영부

당첨자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LH청약플러스 앱에 게시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자 명단 및 순위는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 미계약 시 예비자 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 및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미계약 잔여세대 없는 경우 문자 안내 후 예비자 지위 삭제)
- 예비자 계약체결 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예비자)는 서류제출 기한(2024.04.30~2024.05.03) 내에 아래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 및 예비자 지위 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매각공고일(2024.04.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서류결격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표기되도록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합니다.(동의서 양식은 LH청약플러스 매각공고에 별도 첨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⑤ 신분증 및 도장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도장 지참
○			본인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양식은 LH청약플러스 매각공고에 별도 첨부
	○	⑦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본인	※ 해당자만 제출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
※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			신청자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가 첨부된 위임장,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VI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매각공고일(2024.04.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내방, <b>현장수납 불가</b> ) ※ 계약자명으로 입금[납부계좌 : 농협 824-01-016507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필수) (LH 청약플러스(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에서 인쇄 또는 계약 장소에 비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V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고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주택(사전)개방일에 세대내부·단지·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 및 수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개방 :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2024년 6월 중)**
- ※ **주택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택개방일에 주택을 확인하시고, 확인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장소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위치 : LH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 대중교통(버스)  
- 100, 152, 156, 212번 등 (롯데아파트 하차)

문 의	055-210-8403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인 터 넷	LH 청약플러스(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2024.04.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